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159

발의연월일 : 2026. 10. 28.

발 의 자 : 김기현・이종배・김위상
윤한홍・김태규・안상훈
서범수・최수진・김석기
김정재・이달희・박성민
한지아・김대식・박수민
박충권 의원(16인)

제안이유

폐기물을 골재 등 관련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제품으로 제조한 것을 성토・복토 등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별도의 인・허가나 신고 등의 행정절차 없이 인・허가된 토목・건축공사 등에 재활용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음.

이 경우 성토・복토 용도의 폐기물 재활용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관할 행정기관의 사전 확인 및 사후 관리 절차가 미흡하여, 관리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재활용을 가장한 불법 성・복토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폐기물 또는 재활용 골재・토사 제품을 성토재・복토재로 공급・운반・사용하는 과정에 대한 계획 승인, 인수・인계 내역 입력,

시작·완료 보고 등의 관리체계를 두고 있지 아니하며, 성토·복토 재활용을 완료한 후 관할 행정기관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도 없음.

이에 폐기물 또는 재활용 골재·토사 제품을 성토·복토 등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 폐기물 또는 재활용 골재 공급계획 제출·승인토록 하고, 재활용 골재도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며, 성토·복토 대상부지 관할 행정기관에 성토·복토 관련 사항을 보고토록 하고, 재활용을 가장한 불법 성토·복토 행위자의 경우 불법 매립 행위자와 동등한 벌칙을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폐기물 또는 재활용 골재 등의 공급계획 제출·승인,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현장정보 입력, 재활용 시작 및 완료 보고, 유해물질 함유량 및 토양오염도 등에 관한 사항을 재활용 준수사항에 포함토록 함(안 제13조의2제3항 단서 신설).

나. 재활용 골재 등을 성토재·복토재 등으로 공급·운반·사용하는 경우에도 인계·인수 내역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함(안 제18조제3항).

다. 성토·복토 폐기물 종류·양, 유해물질 등의 함유 정도, 사용 기간 및 완료 후 주변환경영향 조사·분석에 관한 사항 등을 성토·복토 대상부지 관할 행정기관에 보고토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38조의2 및 안 제68조제1항제9호의5 신설).

라.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성토·복토하는 경우를 부적정처리폐기물 및 매립 행위에 명시적으로 포함함(안 제63조제2호).

법률 제 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폐기물 또는 폐기물을 재활용한 골재·토사제품 등(이하 "재활용 골재 등"이라 한다)을 성토·복토 등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3조의2제3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폐기물 또는 재활용 골재 등의 공급계획 제출·승인에 관한 사항
2. 제18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 처리현장정보 입력에 관한 사항
3. 재활용 시작 및 완료 보고에 관한 사항
4. 유해물질 함유량, 토양오염도 등에 관한 사항

제18조제3항 본문 중 "사업장폐기물"을 "사업장폐기물 또는 재활용 골재 등"으로,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재활용 골재 등을 성토재·복토재 등으로 공급·운반·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처분하는"으로 한다.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성토·복토 재활용의 보고 등) ① 폐기물 또는 재활용 골재

등을 성토·복토 용도로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토·복토 대상부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성토·복토 용도로 사용하려는 폐기물 등의 종류·양, 유해물질 등의 함유 정도 및 성토·복토 기간 등에 관한 사항
2. 성토·복토 완료에 관한 사항
3. 폐기물, 재활용 골재 등의 성토재·복토재 사용기간 동안 및 성토·복토 완료 후 주변환경영향 조사·분석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의 내용·시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63조제2호 중 “매립”을 “매립(제13조의2를 위반하여 성토·복토 등에 적합하지 않은 폐기물을 사용하거나 재활용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66조제1호 중 “제65조제1호”를 “제63조제2호의 경우와 제65조제1호”로 한다.

제68조제2항에 제9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5. 제3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 인계·인수 및 폐기물처리현장정보 입력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폐기물 또는 재활용 골재 등을 성토재·복토재 등으로 공급·운반·사용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성토·복토 재활용의 완료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폐기물 또는 재활용 골재 등을 성토재·복토재로 사용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의2(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 ①·② (생 략)	제13조의2(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오염 예방 및 저감방법의 종류와 정도, 폐기물의 취급 기준과 방법 등의 준수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후단 신설>	③ ---------- ---------- ---------- ---------- ---------- ----------. 이 경우 폐기물 또는 폐기물을 재활용한 골재·토사제품 등(이하 “재활용 골재 등”이라 한다)을 성토·복토 등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 설>	1. 폐기물 또는 재활용 골재 등의 공급계획 제출·승인에 관한 사항
<신 설>	2. 제18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 입력에 관한 사항
<신 설>	3. 재활용 시작 및 완료 보고에 관한 사항

<신 설>	4. 유해물질 함유량, 토양오염도 등에 관한 사항
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① (생 략)	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삭 제	
③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이하 “폐기물처리현장정보”라 한다)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폐기물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 사업장폐기물 또는 재활용 골재 등--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재활용 골재 등을 성토재·복토재 등으로 공급·운반·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처분하는 ---------- ----------. ---------- ---------- ---------- ---------- ---------- ---------- ---------- ---------- ---------- ---------- ---------- ----.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8조의2(성토·복토 재활용의 보고 등) ① 폐기물 또는 재활용 골재 등을 성토·복토 용도로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토·복토 대상부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성토·복토 용도로 사용하려는 폐기물 등의 종류·양, 유해물질 등의 함유 정도 및 성토·복토 기간 등에 관한 사항 2. 성토·복토 완료에 관한 사항 3. 폐기물, 재활용 골재 등의 성토재·복토재 사용기간 동안 및 성토·복토 완료 후 주변환경영향 조사·분석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의 내용·시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6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	제63조(벌칙) ---------- ---------- ----------

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한 자	2. ---------- -------- 매립(제13조의2를 위반하여 성토·복토 등에 적합하지 않은 폐기물을 사용하거나 재활용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6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6조(벌칙) ---------- ---------- ---------- --------.
1. 제13조 또는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자(제65조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1. ---------- ---------- --제63조제2호의 경우와 제65조제1호---------- ---
1의2. ~ 19. (생 략)	1의2. ~ 19. (현행과 같음)
제68조(과태료) ① (생 략)	제68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

1. ~ 9의4. (생 략)	1. ~ 9의4. (현행과 같음)
<신 설>	9의5. 제3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0. ~ 12의4. (생 략)	10. ~ 12의4.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